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41

발의연월일: 2020. 11. 4.

발 의 자:김희국·권명호·추경호

강기윤 • 이만희 • 김영식

하영제 • 김석기 • 구자근

김형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음. 이는 국내 항공 산업에 외국인이 진출하는 것을 규제하여 국내 항공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그런데 자본시장이 개방 되면서 국내 법인에 대한 외국인 주식 투자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조차도 외국인 주식 또는지분 비중이 높은 경우 항공기를 보유하는 것이 위법이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기업 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항공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용 항공기에까지 동일한 제한을 과하여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사업 외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는 외국인 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용 항공기를 등 록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4호).

법률 제 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지배하는"을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사업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항공기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①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	
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	
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4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	
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	
상 <u>지배하는</u> 법인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항
	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
	른 항공사업의 목적으로 항공
	기를 등록하려는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